

의안번호	2214500
의 퇴 인	권향엽 의원
회 답 일	2026. 1. 21.
추계번호	25A6271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)	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(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의 후속 계획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가 수립한 후속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7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0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10제7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에 시·도지사가 수립한 후속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의 후속 계획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안 제10조제7항 전단)¹⁾

1) 또한, 개정안은 “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”에 대하여 해당 시·도지사로 하여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안 제9조제3항제2호 신설)

-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으며, 현행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(4곳)의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전환 여부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서 지정기간 만료 이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현행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4곳(전남 여수, 충남 서산, 경북 포항, 전남 광양)이며, 동 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25년 기준 51억 6,500만원 규모임
 - 참고로, 현행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현황

구분	지역	지정기간
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	—	—
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	전남 여수	‘25.05.01~’27.04.30.
	충남 서산	‘25.8.28.~’27.8.27.
	경북 포항	‘25.8.28.~’27.8.27.
	전남 광양	‘25.11.20.~’27.11.19.

자료: 산업통상부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